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50
----------	-------

발의연월일 : 2025. 9. 29.

발 의 자 : 진성준 · 모경중 · 어기구
문정복 · 이정문 · 김태년
박홍배 · 이용우 · 황명선
서영석 · 임오경 · 문대림
조정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부품 등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자(대기업을 말함)가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는 2025년까지는 면제이나,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29년에 일몰될 예정임.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항공 관련 운송·제조·정비(MRO)산업 분야에서 비용 상승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 외의 자에 대한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규정을 삭제

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건전화
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를 “기업(제2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을 “제1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9조(서울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서울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 ⑤ (생략)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89조(서울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 ----기업(제2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
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
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
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
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부터 12	부터 12	부터 12	부터 12	부터 12
월 31일	월 31일	월 31일	월 31일	월 31일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100분의	100분의	100분의	100분의	100분의
100	80	60	40	20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
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
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2019 년 5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00 분의 90	2020 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00 분의 80	2021 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00 분의 70	2022 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00 분의 60	2023 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00 분의 50	2024 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00 분의 40	2025 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00 분의 20
--	--	--	--	--	--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⑧ (생략)

⑦ -----

-----제1항을-----.

⑧ (현행과 같음)